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 직 자 윤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업심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는 한편, 선물신고업무의 전산화·취업이력공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진단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안 제3조제5항제9호의5 및 제31조제1항제11호의2)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로 보아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해왔음.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3)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명확성을 확보함.

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9조의3제1항)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이며, 신설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제4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게도 준용됨.
- 3)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뢰도 및 심사 업무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준을 이원화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 1) 자본금이 작으나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2) 영리사기업체는 현재 자본금 10억원 및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물신고 업무 전산화(안 제36조의2제1항제8호)

- 1) 선물등록부터 이관, 매각관리 등 선물신고 업무 일반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기능을 고도화함.
- 2)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신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전산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3) 전산화를 통한 선물신고 업무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취업이력공시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제4호)

-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2) 취업이력공시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3) 엄정한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안 제36조의5)

- 1)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제도의 기획·총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진단 및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개별기관의 공직윤리업무 수행의 엄정성 및 공정성 확대가 예상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18.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제19조의3의 제목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31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제33조제1항제1호 중 “100억원”을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의 신고

제36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의4에 따른 취업이력공시 등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별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④ (생략)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⑤ ----- ----- ----- ----- -----.
1. ~ 9의4. (생략)	1. ~ 9의4. (현행과 같음)
<u><신설></u>	<u>9의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u>
10. ~ 20. (생략)	10. ~ 20.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u><신설></u>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의 결격사유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생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11. (생략) <u><신설></u> 12. ~ 26. (생략) ②·③ (생략)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u>100억원</u>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 4. (생략) ② ~ ⑦ (생략)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	①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u> 12. ~ 2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 -----. 1. ----- ----- ----- ----- <u>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u>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
---	--

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
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
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
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
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1. ~ 3. (생략)

화)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의 신
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법 제19조의4에 따른 취업이 력공시 등</u>
<u><신 설></u>	<u>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별 공 직윤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점 검·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452